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3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년 10월 17일
- 회 부 일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 전자송달 등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 폐지와 동시에 세액공제액을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 관련 조례 위임규정의 일몰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본 조례의 경감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을 신청하여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250원 또는 600원에서 800원 또는 1,600원으로 상향함.(안
제16조)
- 나.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률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비용추계서 요약>

○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는 250원 ⇒ 800원(인상)
- 전자고지 & 자동이체는 600원 ⇒ 1,600원(인상)

○ 산출기준

- 고지건수: 2021년 기준 세액공제 건수 기준
- 연도별 세액공제 고지건수 증가비율 : 매년 25% 증가 가정

(단위: 천건, 백만원, %)

구분	평균	'23	'24	'25	'26	'27
건수	8,705	5,303	6,629	8,286	10,358	12,948
증감액	5,301	3,229	4,037	5,046	6,307	7,884
증감율	25	25	25	25	25	25

-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감소(세액공제)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시비	지방세수입	△3,229	△4,037	△5,046	△6,307	△7,884	△26,503

※ 매년 25%씩 자동이체 등 세액공제 대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가정

다. 입법예고 (2022. 9. 15. ~ 10. 5.)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종교단체의 의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문을 삭제하고(안 제4조), 지방세를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 받거나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 삭제(안 제4조)

- 안 제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해 오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 규정의 일몰기한(2020.12.31.까지)이 경과된 사항과,
 - 이후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에서 직접 규정(2021. 1. 1. 이후)해오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일부개정, 2022.1.1. 시행)에서는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 특례)에서, 2022.12.31.까지 재산세는 100분의 50내에서,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도청소재지의 경우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그 외의 지역 100분의 40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2021년부터는 취득세 100분의 30,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법(일부개정(2021.12.28., 시행 2022.1.1.))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일몰규정으로, 취득세는 100분의 30(감염병원은 100분의 40), 재산세는 100분의 50(감염병원은 100분의 60) 감경하도록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제38조제4항) >

종 전 [2018.12.24., 일부개정, 시행 2019.1.1.]	현 행 [일부개정, 시행 2022.1.1.]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④ (중전과 같음) <2021.12.28>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2018.12.24>

1.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가. 특별시·광역시 및 도청 소재지인 시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과 같다.</p> <p>1. 법 제38조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 100분의 20</p> <p>2.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로 한정한다)의 경감률: 100분의 50</p>	<p><삭 제></p>

- 다만, 법(제38조제4항)에서는 2021년부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의 위임 없이 법으로 직접 규정(2021.1.1.부터)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조례안 제출까지 2년 가까이 이를 방치하였는바, 본 개정안의 입법 지연에 대한 재무국의 해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16조)

- 안 제16조는 지방세 정기분 세목*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받거나, 고지 세액을 ‘자동이체(신용카드, 계좌)’ 방식으로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액의 규모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상한액**에 일치시켜 확대하려는 것으로,

* 정기분 세목(시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92의2) >

종 전		⇒	**현행(2022.1.1. 시행)	
구분	세액공제 금액		구분	세액공제 금액
전자송달	150원 ~ 500원		전자송달	250원 ~ 800원
자동이체	150원 ~ 500원		자동이체	250원 ~ 8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300원 ~ 1,000원		전자송달& 자동이체	500원 ~ 1,600원

※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법 제2조의2제3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하위 법령 적용요령 중 >

종 전	현 행 [법률 제18656호, 2021.12.28, 일부개정, 시행 2022.1.1.]
<자동이체 세액공제§92의2> ○ (감 면 액) (택 1) <u>150원~500원</u> (병행) <u>300원~1,000원</u>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감면 확대 ○ (감 면 액) (택 1) <u>250원~800원</u> (병행) <u>500원~1,600원</u> ※ 지자체별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함

※ 출처: 「2022년 시행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내용 및 적용요령 송부」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34(2022. 1. 4.)

- 납세자가 전자송달 고지 또는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 건당 세액 공제액을 각각 800원으로 인상하고(현행 250원),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1,600원으로 인상(현행 600원)하려는 것임.

< 본 개정조례안 세액공제 확대안 >

현 행	개 정 안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 (감 면 액) (택 1) 250원 (병행) 600원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확대> ○ (감 면 액) (택 1) <u>800원</u> (병행) <u>1,600원</u>

< 본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250원</u>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u>600원</u> ② (생략)	제16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1. ----- ----- ----- ----- ----- <u>800원</u> 2. ----- ----- <u>1,600원</u> ② (현행과 같음)

-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한 법(제92조의 2) 개정(2022.1.1. 시행) 취지는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 규모를 감안하여 인상(60%)한 것으로 보임.

※ 2021.9.1. 이후 현재 일반우편 기본 요금 최저 400원, 등기우편 최저 2,500원

- 「법」 상한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 2022년도 세액공제액은 현행 12억 5천 5백만원 대비 205.8%(25억 8천 3백만원) 증가한 38억 3천 8백만원 수준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본 개정안에 따른 비용 추계 상세내역(세액공제) >

- 비용발생 요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는 250원 ⇒ 800(인상)
- 전자고지 & 자동이체는 600원 ⇒ 1,600원(인상)

- 산출기준

- 고지건수: 2021년 기준 세액공제 건수 기준
- 연도별 세액공제 고지건수 증가비율 : 매년 25% 증가 가정

- 산출결과

- 개정시 추가비용('22년 기준): 2,583백만원(1,255백만원 ⇒ 3,838백만원)
(전자고지(1,843백만원), 자동이체(185백만원), 전자고지&자동이체(555백만원))

- 한편, 재무국에서는 기존 「서울특별시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에 따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납부로 인한 송달비용 등 징세비용 절감액에 대한 실비보상 취지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는 본 개정조례안의 세액공제 확대안에 맞추어 폐지하고,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 마일리지 적립 제도(2007.7.30., 제정, 시행)는 현재 서울특별시만 운영(부산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전자고지 마일리지 적립제도를 법상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기존 적립 마일리지 소멸될 때까지만 존치)

* 「마일리지·세액공제 통합을 위한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재무국 세무과-28074(2022.7.26.), 이하 “개선계획”

구분	현행	개정
전자송달 자동이체	마일리지 적립 + 세액공제 병행	세액공제 방식으로 통합 (마일리지 적립 폐지)

<세액공제·마일리지 제도 개선방안>

(단위 : 원)

구분	현행 (A+B)			개선안		
	마일리지 (A)		세액공제 (B)	마일리지		세액공제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전자고지	350	850	250	폐지	폐지	800
자동이체	-	-	250	-	-	800
전자고지& 자동이체	500	500	600	폐지	폐지	1,600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③ 전자납세자에게는 서울특별시세 등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서 실비 보상 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전자납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둘 수 있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자납세자에 대한 실비보상은 납부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mileage)를 개인 납세자 주민등록번호별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적립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350원.
2. 고지서 건당 부과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건당 850원. 다만, 자동이체자는 납부건당 500원

○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인상과 규칙 개정에 따른 마일리지 폐지를 감안할 때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규모는 2021년 실적* 기준으로,

* 2021년 정기분 고지 17,126천건 중 전자고지 건수 3,394천건(19.8%)

- 당초 19억 7백만원 대비 61.0%(11억 6천 3백만원) 증가한 30억 7천만원 수준으로 분석되고,

<세액공제·마일리지 통합 개선에 따른 세액공제 증·감 현황>
(2021년 자료기준) (단위: 천건, 백만원)

구 분	현 행				개선안			
	건 수			계 (A)	마일리지급액	세액공제액	세액공제액(B)	증감액 (B-A)
	계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계	3,394	2,607	787	1,907	1,243	664	3,070	1,163
전자고지 신청	2,681	2,035	646	1,536	1,134	402	2,144	608
자동이체 신청	269	208	61	40	0	40	215	175
전자고지& 자동이체	444	364	80	331	109	222	711	380

※ 2021년 전자고지 자료 기준으로 최대금액인 800원~1,600원으로 하여 분석

※ 제도 개선에 따른 전자송달 등 납세자에 대한 혜택 규모는, 세액공제는 664백만원에서 3,070백만원으로 2,406백만원 증가하고, 마일리지 1,243백만원이 감소하여 합계 1,163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 세무과-28704, 2022.7.26.)

- 전자송달 등에 따른 징세비용(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 절감액은 31억 9천 5백만원으로 분석되어,

- 세액공제의 법정 상한액으로의 확대와 함께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본 개선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총 징세비용의 3.8%(1억 2천 4백만원)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바,

<개선계획에 따른 징세비용 절감액 추계>

(2021년 실적 기준, 단위: 건/원)

구분	징세비용(A)	세액공제금액(B)	징수비용(예산) 절감액(A-B)
금액	3,195,010,535	3,070,800,800	124,209,735
건당 평균금액	941	905	37

※ 세액공제 전체 건수: 3,394,112건(30만원 미만 2,606,841건, 30만원 이상 787,271건)

※ 징세비용 : 고지서 제작(건당 54.24원)

※ 일반우편 기본 요금 최저 400원, 등기우편 최저 2,500원(2021.9.1. 책정액)

- 지방세의 전자송달 방식 등에 따른 징세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권익과 납세 편의 확장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세액공제 제도 취지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개선계획)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종전 본 조례 개정(2022.4.28. 일부개정, 시행) 후 6개월만에 같은 취지의 본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재무국의 세액공제 제도의 주먹구구식 운영을 보여주는 것으로, 면밀한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제도 변천내역 비교표 >

(단위: 원)

○ 세액공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6조

○ 마일리지: 「서울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시행일자	신청 구분	합계 금액	세액공제	마일리지
'07.10.1	전자송달	500		500
	자동이체	X	X	X
	전자송달&자동이체	500		500
'09.8.6	전자송달	500		500
	자동이체	X	X	X
	전자송달&자동이체	500		500
'11.7.28	전자송달	500	X	500
	자동이체	650	150	X
	전자송달&자동이체	1,000	500	500
'17.4.6	전자송달	500	X	500(30만원 미만)
	자동이체	1,000		1,000(30만원 이상)
	전자송달&자동이체	150	150	X
	전자송달&자동이체	1,000	500	500

시행일자	신청 구분	합계 금액	세액공제	마일리지
'18.5.3	전자송달	650	150	500(30만원 미만)
		1,150		1,000(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50	150	X
	전자송달&자동이체	1,000	500	500
'19.1.17	전자송달	500	150	350원(30만원 미만)
		1,000		850원(30만원 이상)
	자동이체	150	150	X
	전자송달&자동이체	1,000	500	500원
'22.4.28	전자송달	600	250	350원(30만원 미만)
		1,100		850원(30만원 이상)
	자동이체	250	250	X
	전자송달&자동이체	1,100	600	500원

○ 또한, 그동안의 마일리지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017년부터 2021년 까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마일리지 3억원에 이르고 있고,

<최근 5년간 마일리지 시효소멸 현황>

년도별	건수	명수	적립액(천원)	1인 평균 적립액(원)	소멸액(천원)
계	8,259,459	3,103,501	4,185,613	1,349	294,167
2021년	2,588,590	982,496	1,243,549	1,265	73,078
2020년	2,117,059	807,542	1,004,605	1,244	71,282
2019년	1,507,615	569,163	716,558	1,258	65,917
2018년	1,120,569	406,746	670,452	1,648	53,497
2017년	925,626	337,554	550,449	1,631	30,393

※ 출처: 전자고지·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계획(세무과-28074, 2022.7.28.)

※ 소멸분 처리 방법

- 소멸예정 마일리지 상시 안내(ETAX, STAX, 이메일 고지서)
- 유효기간(5년)이 경과하는 연도 12월 31일 자동소멸
- 소멸된 마일리지는 익년 1월 초 세외수입(기타잡수입)으로 세입처리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전자납세자의 선발 및 지원)

⑥ 제3항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는 적립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현재까지의 미지급된 누적 마일리지 또한 27억원을 상회하고 있는바, 마일리지 제도의 폐지를 앞둔 현 시점에 미지급 마일리지의 적극적 환원을 통한 시민의 권익 보호에 재무국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최근 5년간 마일리지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적립액	사용액	미사용액	소멸시기
합계	5,508,684	2,796,819	2,711,865	-
2017	550,449	454,750	95,699	2023년
2018	670,452	530,021	140,431	2024년
2019	716,557	488,984	227,572	2025년
2020	1,004,605	568,736	435,868	2026년
2021	1,243,549	539,517	704,032	2027년
2022.10	1,323,073	214,811	1,108,262	2028년

다. 기타(부칙)

-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제1조), 적용례(제2조), 경과조치(제3조)를 규정하고 있음.

- 부칙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금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를 구분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정기분 세목(시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

- 이외 부칙 제2조에서는 세액공제 확대 사항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건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 부칙 제3조는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하여 본 조례(안) 시행 이전에 성립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보호를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확인적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위원

김정덕

입법조사관

최석훈

붙임

타시도 전자송달·자동이체납부 납세자 지원제도 현황

(단위: 원)

구분 (세액공제)	전자송달	자동이체	전자송달 & 자동이체	개정일	구분 (마일리지)	전자송달	전자송달 & 자동이체
서울	800	800	1,600	(개정안)	서울	350 (30만원 미만) 850 (30만원 이상)	500
부산	500	500	1,000	'22.4.13.			
대구	300	300	700	미개정			
인천	800	800	1,600	'22.4.21.			
광주	500	500	1,000	'22.4.26.			
대전	500	500	1,000	'22.4.15.			
울산	500	500	1,000	'22.4.17.			
세종	800	800	1,600	'22.4.20.			
경기	250	250	500	'22.7.			
강원	500	500	1,000	'22.6.30.			
충북	250	250	500	'22.6.30.			
충남	150	150	300	추진중			
전북	500	500	1,000	'22.5.13.			
전남	500	500	1,000	'22.5.19.			
경북	250	250	500	'22.4.25.			
경남	250	250	500	미개정			
제주	500	500	1,000	미개정			